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5-51
--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5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위원 수 확대를 통하여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기금 운용 심의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마포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수 변경(안 제10조제2항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」 제10조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25. 4. 17. ~ 2025. 5. 7.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
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4)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개선사항 없음

5) 제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: 원안 의결(2025. 5. 12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10명”을 “15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(생 략)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<u>10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한다. ③ ~ ⑧ (생 략)	제10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15명</u> ----- -----. ③ ~ ⑧ (현행과 같음)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제10조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행정지원국 구민안전과 박신영
연 락 처	02-3153-1642